

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 안내

 **보건복지부** 영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안내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▶ 보건복지부 고시 제**2022-219**호(**2022.9.26.**)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▶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 안내. [2022.10.1.일 적용]

수가변경	등급	1일 비용	월 급여비용 (30일 기준)	본인부담금 (20%)
2022.10.1. 적용	1	78,200	2,346,000	469,200
	2	72,550	2,176,500	435,300
	3,4,5	68,510	2,055,300	411,060

▶ 이전 수가는 2022년 10월 이전 청구분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.

이전수가	등급	1일 비용	월 급여비용 (30일 기준)	본인부담금 (20%)
이전수가(폐지)	1	74,850	2,245,500	449,100
	2	69,450	2,083,500	416,700
	3,4,5	64,040	1,921,200	384,240

▶ 장기요양수가 적용은 **2022.10.1.** 시행되며, **2022년 10월**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로 적용 됩니다.

▶ 본인부담금의 급여비용 이외의 비급여 항목 (식사재료비, 상급침실비, 이미용비, 간식비)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